##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

(제정 2013.4.1., 최종개정 2023.11.1.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학칙시행 규칙」제7조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변경 2019.4.1.)
- 제3조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 ①위원장은 인권·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공정관리활동 및 입시관련 자체감사 등을 총괄한다.(변경 2023.11.1.)

②위원은 각 전형별 공정관리활동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, 활동종료 후 3일 이내에 공정관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.
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대학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 수립
  - 2.대학입학전형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
  - 3.입학전형업무 담당자 통제
  - 4.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감사
  - 5.대학입학전형의 자체 감사
  - 6.기타 공정관리에 관련한 사항
- 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제6조(주관 등) 회의는 인권·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,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감사팀 직원으로 한다.(변경 2023.11.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